

大田直轄市草地造成審議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

議案 番號	312
----------	-----

提出年月日：'93. 10. .

提出者：大田直轄市長

1.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

- 우리市는 1973年 以後 草地造成許可 實績이 없고 與件上 家畜飼育 目的 위한 草地造成은 지극히 어려운 實情이며, 現在 既成草地 122ha 를 管理함에 있어 草地法 및 本法 施行令에서 本委員會 審議를 거치 도록한 事項 사안發生時 市政調整委員會에 統合 處理코자 本 草地 造成審議委員會條例를 廢止하고자 함.

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

대전직할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

대전직할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